



공동체 지원, 회복, 강화법

CARE 법 용어집¹

공동체 지원, 회복, 강화(CARE)법은 조현병 및 기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주거 자원, 기타 서비스 등 자발적인 CARE 협약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CARE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성인이 민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CARE 협약.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자발적인 합의 협약. CARE 협약은 피신청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ARE 보험과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

CARE 보험. 복지 및 공공시설법(WIC) 제5982조에 따라 임상적으로 적절한 행동 건강 관리 및 안정제,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별화되고 적절한 범위의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

CARE 법 절차. CARE 법 시행을 위한 법원 및 관련 절차²

변호사. WIC 제5980조에 따라 제공되거나 피신청인이 선택하여 CARE 법 절차, CARE 협약, CARE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 WIC 제5607조에 설명된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책임자, 해당 지역 행동 건강 책임자 또는 두 사람 모두.

법원 명령에 의한 평가. WIC 제5977조에 따라 상급 법원이 명령한 평가.

졸업자 보험. CARE 프로그램 종료 시 당사자들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며, 성공적인 법원 관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고급 정신 건강 의학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졸업자 보험은 피신청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ARE 보험과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 졸업자 보험은 지방 정부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

노숙자 지원 인력.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을 필요를 평가하고, 정보, 서비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돌봄 조정을 제공하는 사람.

인디언 의료기관. 인디언 의료 개선법 제4조(25 U.S.C. Section.1603)에 규정된 대로 인디언 보건국, 인디언 부족, 부족 기관, 도시 인디언 기관(I/T/U)이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

면허를 취득한 행동 건강 전문가. (1) WIC 제4096(j)조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2) [WIC 제5751.2 조](#)에 따라 관계 부처의 면허 요건 면제를 승인받은 사람.

신청인.³ CARE 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주체. 또한, 신청인이 해당 카운티의 행동건강관리국의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 이외의 [WIC 제5974조](#)에 명시된 사람인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최초 심리에서 법원은 절차가 제출된 카운티의 행동건강관리국의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을 신청인으로 대체해야 한다. 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신청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WIC 제5977\(b\)\(7\)\(A\)조](#)에 기술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고급 정신 건강 의학 지침. 의학적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법적 문서로서, 정신질환자가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사전에 문서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피신청인. CARE 법 절차에 대한 신청의 대상자.

안정제. 환각, 망상, 무질서한 사고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주로 항정신병약으로 구성되어 CARE 보험에 포함된 약물. 안정제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기 작용 주사제로 투여될 수 있다. 안정제는 강제로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후원자. 제4장(WIC 제5980조부터)에 따라 지정된 성인으로서, CARE 협약, CARE 보험, 졸업자 보장 계획 수립 등 CARE 법 절차에서 결정 이해, 결정, 의사소통, 실행, 행동을 지원한다. 후원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약어

CARE 공동체 지원, 회복, 강화법

JCC 캘리포니아주 법제사법위원회

CalHHS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

MHSA 정신건강증진법

DHCS 보건복지과

WIC 복지 및 공공시설법

¹ 모든 정의는 [WIC 제5971조](#)와 같다. 더 자세한 정보는 [CARE 법](#) 참조.

² 관련 절차에는 카운티 기관의 참여와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의 임상 평가가 포함된다.

³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법제사법위원회 CARE 법 웹사이트](#) 또는 [WIC 제5977\(b\)\(7\)\(A\)조](#) 참조.